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6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희정 · 권영진 · 강승규
김은혜 · 김승수 · 이인선
김도읍 · 임종득 · 서지영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만,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

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기상·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 ----- ----- ----- ----- ----- ----- ----- ----- ----- ----- ----- ----- ----- ----- ----- <u>.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u>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u>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제1

